

산림교육센터 지정서

지정번호	제 호		
센터명칭			
대표자성명 또는법인명	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위치			
규모	산림면적	m ² (자연림	m ² , 인공림 m ² , 공원
	시설면적	m ²	

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산림청장



유의사항

- 1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,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2년 동안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.
 - 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
 - 나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산림교육센터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
 - 다. 산림교육센터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
 - 라.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
-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- 3.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